

近代国民国家와 標準語政策의 史的考察

—多文化社会를 향한 言語政策의 觀點에서—

邢 鎮 義*

(e-mail: hjini117@hnu.kr)

목 차

1. 머리말
 2. 프랑스 혁명과 표준어
 3. 근대 일본의 표준어 정책
 - 3.1 국어조사위원회 설립과 방언 조사
 - 3.2 표준어에서 공통어로
 4. 한국의 표준어 정책
 - 4.1 조선총독부의 한글 철자법 개정
 - 4.2 조선어학회의 한글 철자법 개정과 표준어
 5. 맺음말 -다문화 사회와 언어적 공공성-
-

1. 머리말

2008년 프랑스 국민회의가 지역 언어, 즉 방언을 프랑스의 문화적 유산으로 인정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해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자국어 우월주의로 유명한 프랑스는 1635년 '아카데미프랑세즈'의 설립과,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본격적인 근대 국가로서의 언어정책을 시행해 세계 최초로 단일 언어에 의한 배타적 언어정책을 시행한 국가로, 프랑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시사한 바가 크다. 그 배경에는 프랑스 내의 다양한 지역 언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저 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력 유입, 그리고 이민을 현실 문제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 한남대학교 교양융복합대학 조교수 일본어학·사회언어학

되는 상황 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단일 민족, 단일 언어의 이념 하에 경직된 언어 정책을 시행해 온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의 양상 등, 프랑스와 다르지 않은 현실에 있어서 그간의 표준어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절실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국민국가의 언어정책의 시발점이며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혁명에서의 언어 정책과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의 언어정책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여,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에서의 표준어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로 삼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언어 정책의 시작에 주목하여 그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숙명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당시 조선)에서의 표준어 제정 과정에서 일본의 표준어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올바른 언어’인 ‘표준어’에 부여된 절대적인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표준어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에서의 언어 정책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언어’, ‘올바른 언어’에 대한 가치 부여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 프랑스 언어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일본의 경우 이연숙(1996), 야스다(1997)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서서는 다문화 다언어 사회를 키워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이상규(2008) 등을 비롯해 최근 일고 있는 일련의 표준어 논쟁을 통해 표준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의 표준어 논의는 표준어vs방언, 즉 서울vs지방의 구도에서의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그 뿐 아니라 다문화 사회를 염두에 둔 표준어 논의도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2. 프랑스혁명과 표준어

문화와 인간관의 레벨에서 ‘근대’는 15세기 르네상스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경제적인 레벨에서의 ‘근대’는 18세기 산업혁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프랑스혁명은 정치적 레벨에서의 ‘근대’의 시작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즉 프랑스혁명은 ‘근대국민국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에 의한 바스티유감옥 점거를 시작으로 일어난 프랑스혁명에 의해 정치적 결합체인 ‘국가’가 구축되고, 이 ‘국가’의 주체로서 ‘국민’이 상정된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은 혁명을 이끄는 혁명가들에 의해 ‘불가분의 공동체’의 존재로서 구축되어 간다. 프랑스혁명에서 주창된 ‘불가분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오늘날 프랑스헌법 제1조 ‘프랑스는 비종교적이며 민주적인 불가분의 사회공화국이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 ‘불가분’은 ‘국민’의 일체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혁명을 성공시켜 ‘불가분의 공동체’인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통일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는데, 당시 프랑스에서는 플라망어(flamand), 브르타뉴어(breton), 바스크어(basque), 카탈로니아어(catalan), 옥시탄어(occitan), 독일어(알자스 Alsace, 로렌느 Lorraine 지방), 이탈리아어(코르시카 Corsica 섬)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참고로, 프랑스혁명 당시 전 인구 2,300만 명 중 600만 명은 프랑스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600만 명은 아주 조금 사용할 수 있었다¹⁾. 즉 18세기까지의 단계에서 프랑스어가 침투한 것은 사회적 상층부뿐이었고, 모든 지방과 계층에 표준프랑스어가 확산된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이다.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언어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 |
|-------------------|---|
| 1789. 7. 14 | 파리 시민에 의한 바스티유(Bastille) 감옥 공략 |
| 1790. 1. 14 | 법령의 지방어로의 번역을 금하는 부셰트(Bouchette)법령 제정 |
| 2. | 그레고와르(Grégoire)가 방언에 관한 질문 표를 각 지방에 발송
언어조사 실시 |
| 1792. 9. 21 | ‘국민공회’설립, 공화정 성립 |
| 1792.11/1793. 12. | 법령의 번역금지 정책 확인 |
| 1793. 6. | 자코뱅파(Jacobin)가 권력 탈취 |
| 1793. 10. | 공안위원회가 중심이 된 혁명 정부 수립 |
| 1794. 1. 27 | 국민공회에서의 바레르(Barère)의 보고서 채택 |
| 4. | 알자스 Alsace에서의 ‘언어적 공포정치’ |
| 6. 4 | 국민공회에서의 그레고와르(Grégoire)의 보고서 채택 |
| 7. 20 |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의 공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²⁾ |

이 중에서 특히 프랑스혁명의 언어정책을 상징하는 두 개의 보고서로 바레르와 그레고와르의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보고서의 내용에서

1) 田中克彦 『ことばと国家』 p101

2)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 중, 프랑스어 이외의 방언, 또는 언어로서 문서를 작성하고, 또는 서명한 자는, 거주지 재판소에 출두하여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한 후 과면해야 한다. <국민공회령 제3조>

프랑스의 언어정책의 방향을 읽을 수 있고, 이후의 다른 국가의 언어정책도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①바레르(Barère)의 보고 (1794년 1월 27일)

‘우리들은 정부도, 풍속도, 사상도 혁명했다. 또한 언어도 혁명하자. 연방주의와 미신은 저지(低地)브르타뉴어를 말한다. 망명과 공화국에의 증오는 독일어를 말한다. 반혁명은 이탈리아어를 말한다. 광신주의는 바스크어를 말한다. 이들 손해와 오류의 도구를 때려 부수자.’

②그레고와르(Grégoire)의 보고 (1794년 6월 6일)

‘방언을 박멸하고 프랑스어의 사용을 보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국어를 모른다는 것이 저토록 많은 사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모든 편견을 근절하고, 모든 진리·모든 재능·모든 덕을 넓히고, 모든 시민을 국민적 집단 안에 용해시켜, 정치적 기계의 메커니즘을 단순히 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동일성이 필요하다³⁾.’

이렇게 하여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입말에 대한 좋고 나쁨, 또는 올바르고 바르지 않음 등의 가치 판단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즉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연방주의자, 미신, 공화국에의 증오, 반혁명, 오류, 손해, 박멸 대상이라는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표준프랑스어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언어에 대한 이러한 가치 판단은 그 후 많은 나라에서 표준어 정책으로서 시행된다. 그리고 프랑스혁명에서의 표준어 보급은 1882년부터 시행되는 무상의무교육제도에 의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일본과 한국에서도 근대 교육 시스템을 통해 표준어 정책이 확대 된다.

3. 근대 일본의 표준어정책

3-1. 국어조사위원회의 설립과 방언 조사

일본에서의 국민국가 탄생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의 언어로서의 언어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1902년 ‘국어조사위원회’에 의해서 이다. 동위원회는 1900년 1월 ‘제국교육회’가 ‘국자 국어 국문의 개

3) 田中克彦 『ことばと国家』 p103

량에 관한 청원서'를 문부성에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설립되었는데, 그 청원서에서 '일본어의 문자, 문체, 문법은 모두 확고한 표준이 없고 무질서한 상태이다. 그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낭비하여 다른 지식을 얻을 틈이 없다. 일본이 세계 경쟁의 장에서 떨치는 제국이 된 이상, 이러한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언어, 문장을 개량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왜냐면 언어의 양불량(良不良)은 국민 교육의 진부진(振不振)과 관련되고, 그것은 국가체력의 우열과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하루속히 국어 국자 문제의 조사에 착수해 득실을 따져 개량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속히 그 방법의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4월에 7명의 조사위원을 임명하여 위원회 설립 준비에 들어가 1902년 '국어조사위원회'가 설립된다. 언어를 개량하여 표준을 갖추는 일은 국력을 키우는 것과 같다는 논리는 일본의 언어 정책의 근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표준어'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1895년 우에다 카즈토시(上田万年)의 '표준어에 대해서(標準語に就きて)'⁴⁾에 의해서이다. 이 논문에서 우에다는 '표준어란 전국 어디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누구에게나 이해되는 말로서, 도쿄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말'이라고 규정했다. 표준어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당시에 이 주장은 '도쿄어=표준어'가 대체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우에다 카즈토시는 '국어조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고 도쿄어=표준어 정책을 구체화해 간다. 그러나 '도쿄의 교육 받은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체도 제시할 수 없는 언어 변종이다. 즉 그런 언어 변종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국어조사위원회'는 이러한 표준어 제정을 위하여 일본에서 최초로 전국 단위의 방언 조사에 착수한다. 이 조사는 일본 최초의 방언 조사이고 이를 토대로 표준어가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조사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는 조사 방법으로, 전국 각지의 사범학교와 교육기관에 38개 조항의 설문을 만들어 우편으로 송부하고 그 결과를 모으는 통신조사방법이었다. 둘째는 설문 문항이다. 38개의 설문 문항이 모두 '동사', '조동사', '형용사', '단정의 조동사' 등 어려운 문법용어로 이루어져있어 응답자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답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는 설문 방법으로, 응답 방법에서 '네/아니요', 혹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넷째는 응답 요령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답이 제각각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지적한대로 '네/아니요'로만 대답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4) 1895년 『帝国文学』 창간호

‘가끔 그렇게 한다’, ‘그럴 때도 있다’, 또는 ‘혼용 한다’는 등의 대답이 있어 정확한 방언 조사의 자료로 삼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보고서는 표준어 제정에서 근거 자료로서 활용된다. 즉 방언 조사의 결과에 의해 표준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쿄어=표준어라는 전제 하에 표준어는 정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 표준어는 언어적 요소에 의해 국가적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과물인 것이다⁵⁾.

그러나 1904년부터 시작되는 국정교과서제도와 1908년부터 시작된 무상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표준어의 국가 규범으로서의 절대적인 가치와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확대된다. 오키나와나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되었던 ‘방언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2. 표준어에서 공통어로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표준어는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에서 표준어 제정 초기에는, 즉 국어조사위원회의 설립과 동위원회에 의한 국어정책이 시행되고 자리를 잡아가는 1902년부터 1945년까지는, 국가 주도의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45년 패전과 함께 연합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회 개혁 가운데 ‘국어’정책도 크게 변하여 ‘국어 민주화’로 대표되는 현대가나즈카이와 1850자의 당용한자 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때 보다 알기 쉬운 ‘국어’로의 개혁에 박차가 가해졌다. 그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기존의 ‘표준어’라는 개념이 품고 있는 국가 주도적인 규범에 대한 반감도 일어 ‘공통어’라는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쿄의 교육을 받은 중류 사회의 언어’라는 기존의 표준어의 기본 개념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고, 다만 모든 사회 계층이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의 ‘공통어’가 용어로서 널리 호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54년 국어심의회는 ‘표준어부회’를 만들어 표준어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표준어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표준어’나 ‘공통어’와 동의어로 해석되고 있는 ‘도쿄어’에서 올바르게 옳은 발음이나 용어나 어법을 제거한 공통어의 규범이 진정한 의미의 표준어다⁶⁾라고 정의한다. 즉 이 시기에 이미 표준어=공통어라는 의식이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공통어=도쿄어 역시 자명한 사실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주목하고 싶은 것

5) 형진의(2008)를 참조 바람

6) 文化庁『国語施策百年史』p468

은, 공통어의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이론적, 어원적, 어법적 견지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사회의 양식 있는 대다수가 이용하고, 불편함 없이 통용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⁷⁾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점이다. 즉 표준어의 기준은 매우 자의적(恣意的)이고 시대 논리에 의해 정해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후 표준어는 공통어의 동의어로, 도쿄어가 그 대표로서 진전된 논의는 없는 채 오늘날까지 당연한 규범으로 굳건히 기능하고 있다. 다만, 표준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방언에 대해서, 국어 정책이 시작된 초기에는 ‘박멸’ 대상으로 표준어로의 교정이 요구되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방언은 공통어와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물론 기존의 ‘국어심의회’가 ‘문화심의회’로 바뀐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것은 또한 언어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에서의 표준어 정책은, 1902년 표준어 제정 당시의 기본 방침이 유지되며 자명한 사실로서 내재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용어가 표준어에서 공통어로 바뀌면서 국가 주도의 기운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일 뿐이다.

4. 한국의 표준어정책

프랑스와 일본의 근대국가 구축과 언어 정책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근대국민국가의 출현에 의해 언어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상태에서,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입말에서 특정한 변종을 선택해 ‘표준어’를 정하고, 거기에 일정한 표기법을 갖추는 절차를 통해 구축되어 간다. 이러한 일련의 규범화 작업은 언어의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이렇게 국가의 언어로서 선택되고 만들어진 ‘국어’와 ‘표준어’는 단순한 언어의 레벨을 넘어 국가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동반한다. 즉 ‘국어’로 선택된 언어는 ‘바른’, ‘아름다운’ 언어이고, 나머지 지방의 언어들은 ‘사투리’로서 ‘교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근대국민국가의 국어 구축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 특이한 점은 이러한 과정이 방언 조사를 통한 표준어 제정이 아니고, 한글의 규범화 즉 철자법 개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⁸⁾.

7) 文化庁 上掲書 469p

1894년 11월, 칙령 제1호 공문식 제14조에는 ‘모든 공문(법령, 칙령)에 국문을 본으로 삼고 한문을 부기하거나 한문을 혼용할 수 있다(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漢文附記或混用國漢文)’고 명시하고 있다. 근대 국가로서 한국, 엄밀히 말하면 조선의, 조선어에 의한 문장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언급이다. 즉 한글이 한문을 대신해 처음으로 ‘국문(國文)’으로 등장하고, 공문서에 공식 문자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글을 공식 문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범을 갖춘 통일된 표기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당시 한글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1907년, 어윤적, 이능화, 주시경, 지식영 등이 참여하여 ‘국문연구소’를 ‘학부’안에 만들고 표기법의 통일 작업에 착수하여 1909년에 한국 최초의 표기법 통일안인 ‘국문연구 의정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10년 한일병합에 의해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면서 이 규범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⁹⁾.

갑오개혁은 일본의 힘에 의존해 진행된 개혁이고, 결국 일본의 침략을 돕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근대사적인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언어 질서를 뒤집는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글의 공문서 사용’은, 갑오개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한글과 한국어의 근대화라는 언어적 측면에서는, 한글이 공식적으로 조선의 문자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언어 정책의 시작인 철자법 개정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언문철자법’과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4.1 조선총독부의 한글 철자법 개정

조선총독부는 아래와 같이 제3차에 걸쳐 한글철자법을 개정한다. 그리고 개정에 따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차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년 4월)

- 1)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
- 2) 표기법은 표음주의에 의하고 발음과 먼 역사적 철자법 등은 이것은 포함
- 3) 한자음으로 된 어를 언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특히 종래의 철자법을 채용함

제2차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개요>(1921년 3월)

- 8) 한국어의 규범화, 언어 정책에서는 표준어 문제 보다 문자 규범을 더 중요시 여겨왔다는 지적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연숙(1987)은 이런 점에 대해 ‘문자 내셔널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9) 김민수(1973), 이익섭(1997) 등을 참고 바람

- 1)용어는 현대의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
- 2)가급적 발음대로의 철자법을 표준으로 함.

제3차 <언문철자법>(1930년 2월)

- 1)조선어 독본에 채용할 언문철자법은 각 학교를 통하여 이것을 동일케 할 것
- 2)용어는 현대 경성어로 표준으로 함
- 3)언문철자법은 순수한 조선어거나 한자음을 불문하고 발음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함. 단 필요에 의하여 약간의 예외를 둬.

이상의 내용에서 조선총독부에 의한 한글철자법 개정의 의미를 몇 가지 확인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조선총독부의 한글철자법 개정은 모두 ‘보통학교’교육, 즉 보통학교의 교과서 집필을 위한 개정이었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갑오개혁에 의해 한글로 공문서를 작성할 것이 공표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국문연구소’의 ‘국문연구의정안’이 만들어졌으나 다음해부터 조선총독부에 의한 식민지배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고, 결국 조선총독부에 의한 근대 교육 시스템의 가동이 철자법 개정을 서두르게 한 것이다. 즉 국가 기관에 의해 개정된 내용이 최초로 근대 교육시스템을 통해 확대되며 그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점은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에서도 확인한 바로서, 한국의 경우도 표준어 규범의 보급에 근대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성어를 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서울말=표준어’의 최초의 언급으로, 이후의 표준어 논의에서 ‘서울말=표준어’에 당위성을 부여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당시 일본에서 있었던 표준어 제정 과정에서의 ‘동경의 교육 받은 사람들의 말’이라는 기준을 조선총독부가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는 점, 일본은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요인에서 ‘도쿄어=표준어’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한국의 경우 표준어 논의 과정에서 ‘서울말=표준어’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일 없이 정착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점은 지적해 두고 싶다.

세 번째는 철자법 개정에서 표음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그 결과, ‘·’가 폐지되고, ‘냐, 더, 도, 듀’가 ‘자, 저, 조, 주’로 표기되게 되었다. 그러나 제1차 개정에서 3차 개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언문철자법’의 원칙에서도 표음주의 변천이 나타나 있으나, 한글 철자법 개정에서 표음주의 표기의 상징인 ‘·’를 구체적인 예로 들어 보고자 한다.

제1차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개정>

순수조선어에 대하여는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ㅏ’로 쓴다.

제2차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대요>

순수조선어에 대하여는 표음적 표기에 따라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한자음은 역사적 철자법에 의하여 ‘·’를 사용함) ‘ㅏ’로 쓴다.

제3차 <언문철자법>

순수한 조선어이거나 한자음임을 막론하고, ‘·’는 전부 폐지하고 ‘ㅏ’로 쓴다.

제1차와 제2차 개정에서는 순수조선어에는 ‘ㅏ’를, 한자어에는 ‘·’를 사용할 것을 정하지만 제3차 개정에서는 순수조선어와 한자어 모두에 ‘ㅏ’를 사용할 것을 정해 결과적으로 ‘·’의 폐지를 이끌게 된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은 일본의 철자법 개정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의 ‘국어’ 구축 과정에서도 철자법 개정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는데, 표음주의 철자법과 전통적인 철자법인 역사적 철자법과의 대립이었다.

일본의 철자법 규정으로서 최초의 규정은 1900년 소학교령에서의 규정이다. 이 소학교령에서 ‘국어(일본어)가나즈카이에는 역사적가나즈카이를 사용하고, 자음(한자어)가나즈카이에는 표음가나즈카이를 사용 한다’고 정한 것이다. 가나 표기에 있어 일본의 전통적 표기법인 역사적가나즈카이 만이 사용되던 당시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 표기법을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순수일본어 표기에 역사적가나즈카이를 사용하고, 한자어 표기에 표음가나즈카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순수일본어에는 일본의 전통과 정신이 깃들어있기 때문에 일본 고유의 표기법인 역사적가나즈카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표기법 정착 과정에 차이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역사적 철자법을 배제하고 ‘발음대로’ 적는 표음표기법을 표방한 것이다.

이러한 ‘표음주의’는 근대 일본의 ‘국어’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 일본의 ‘국어’정책을 이끈 우에다 카즈토시(上田万年, 1867~1937)의 언어관에 기인한 것이다. 우에다는 근대국민국가 일본의 ‘국어’구축에서 무엇보다도 음성에 의한 언어를 강조하여, ‘언어란 소리가기 때문에, 쓰인 문자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흡사 사진과 같습니다’(우에다1889/1968:81p)라고 하여 입말을 기본으로 하는 표준어 제정과 ‘국어’ 구축에 힘썼다¹⁰⁾. 또한 이러한 언어는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정신적 혈액과 같고 그 자체가 ‘동포’임을 나타내는

10) 형진의(2007)를 참고 바람.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여, 언어에 국가주의를 주입했다. 즉 같은 ‘음성’을 공유함으로써 같은 국민으로서의 일체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국민적 연대감을 갖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언어관에 따라 일본의 표기법에서도 역사적가나즈카이를 폐지하고 표음가나즈카이를 채용하게 되었다¹¹⁾. 즉 조선총독부에 의한 한글 정책도 일본에서의 ‘국어’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에 의한 한글철자법인 ‘언문철자법’은 한국에서의 최초의 표기법 개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개정안으로 인해 ‘서울말=표준어’가 정착된 점, 표음주의 표기법의 정착, 그 밖에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 등, 후에 이루어지는 조선어학회의 한글 연구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4.2 조선어학회의 한글 철자법 개정과 표준어

한글의 규범화와 표준어 제정에 결정적인 기준이 된 것은 이미 언급한 조선총독부의 ‘언문철자법’과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문철자법’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개정되어, 보통학교 교과서의 철자법으로 사용된 반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당시 한국어가 공식 언어가 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행정이나 교육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의 ‘안’으로서 제시되었다¹²⁾. 그러나 1945년 해방 이후의 한글 규범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어’연구에서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한글 규범화의 시작이며, 표준어 제정의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내용은 ‘언문철자법’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데, 예를 들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참가한 김윤경(金允經), 박현식(朴顯植), 이극로(李克魯), 이병기(李秉岐), 이희승(李熙昇), 이윤재(李允宰), 정인섭(鄭寅燮), 장지영(張志暎), 이완웅(李完兪), 이세정(李世禎), 권덕규(權惠奎), 정열모(鄭烈模), 최현배(崔鉉培), 신명균(申明均), 심의린(沈宜麟) 중에 장지영, 이완웅, 이세정, 권덕규, 정열모, 최현배, 신명균, 심의린은 조선총독부에 의한 ‘언문철자법’개정에도 참여하고 있었고, 양쪽의 구성이나 체계 면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규범이 상당 부분 ‘언문철자법’과 일치하고 있다(윤석민 2005).

1933년에 발표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을 통해 기본 원칙을 살펴보고, ‘언문철자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1) 물론 표음가나즈카이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1945년 폐전 때까지 거의 사용되지 못하였으나, 일본의 ‘국어’구축에서 ‘음성중심주의’는 핵심이라고 말 할 수 있다.

12) 물론 당시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의 언론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크게 다루며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익섭(1997)참조

- 一, 한글 맞춤법(綴字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語法에 맞도록 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
- 二, 표준말은 大體로 現在 中流 社會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 三, 文章의 各 單語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옷 말에 붙여 쓴다. 13)

먼저 첫 번째 조항인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싶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문철자법’에서는 표음주의 표기에 입각하여 예를 들면 ‘말’을 ‘말(馬)’로 표기하고, ‘덜’은 ‘절(寺)’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따르며, 새로이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원음에 입각한 철자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규정은 표음주의와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원형’을 밝힌다는 의미와 ‘문법’에 맞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원형’은 기본형(basic allomorph)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없-’이 ‘업고, 없는’에서 ‘업-, 업-’과 같은 다른 형태로 바뀌는 모습을 표기법에 반영하지 않고, 그 원형 ‘없-’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곧 각 형태소의 기본형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익섭1997:381p).

한글의 탄생 배경에는 한자를 모르는 민중, 즉 ‘우민(愚民)’이 있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음소문자의 특징을 살려 ‘소리 나는 대로’의 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글의 최대의 강점이었다. 그러나 한글이 근대국가 한국의 ‘국어’로 다시 태어날 때에는 소박한 표음주의에 입각한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닌 원형, 또는 문법을 고려한 형태론적인 시각이 도입된 것이다. 이 형태주의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 정립되어 오늘날의 한글 표기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

다음은 표준어와 관련한 두 번째 조항이다. 표기법 개정에서 어떤 언어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준어 개념이다.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이라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기준은 ‘언문철자법’의 ‘현대 경성어’에서 ‘중류사회’라는 계급적 기준을 첨가한 것으로,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일본의 ‘도쿄의 교육 받은 사람들의 말’에서 영향을 받았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표기법 정비 과정에서 나온 표준어 개념이지만, 1936년 본격적인 표준어 제정 논의가 되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규정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표준어가 정비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말 가려잡기(採摭)에 대하여는, 물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정한 ‘표준

13)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맞춤법은 원문을 따랐다.

말은 대체로 現在 中流 社會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한 原則에 의지하였다. 그러나 가장 보편성이 있는 시골말도 적당히 참작할 필요로 위원은 각 지방을 망라하여 조직하였으니-略-(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머리말 1936년)

그러나 이 규정 역시 일본의 표준어 제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口語法』(1916년)의 규정 '주로 오늘날 도쿄의 교육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구어를 표준으로 정하고, 그 밖에 지방에서 사용되는 구어도 널리 사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참작하여-略-'의 내용과 유사하다. 즉, 한국에서의 표준어 제정은 당시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당연한 귀결이나 일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항인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이다. 한글의 띄어쓰기는 '언문철자법'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규범으로, 당시 일부에서 띄어쓰기가 시도되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인 규범을 제시한 것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처음이고, 또 이 규정이 총론의 세 개 항목 중 하나로 등장한 것에서 띄어쓰기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 확대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근대국가 한국에서의 표준어정책은 식민지 지배기에 시작되어, 지배자 측인 조선총독부에 의한 철자법개정과 당시 민간 기구였던 '조선어학회'에 의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 두 가지 철자법 개정안은 시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선총독부에 의한 개정이, 후에 진행되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쳤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철자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것이 표준어 제정의 기반이 된다는 점은 일본과 다른 점이며, 근대 한국의 언어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정비된 표준어의 절대적 규범으로서의 가치는 일본과 다르지 않다.

5. 맺음말 -다문화 사회와 언어적 공공성-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된 표준어 정책은 지역 언어에 부정적, 차별적 인식을 심어 표준어로의 교정을 유도하는 새로운 '언어'(구체적으로는 입말)에 대한 가치부여라고 할 수 있다.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표준어 정책 역시 전국의 방언 조사를 실시해, 표준어와 방언으로 나누고, 표준어에는 '국어'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방언에는 교정대상으로서의 낙인을 찍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는 달리 철자법 개정이 먼저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표준어 개념이 정착한다. 표준어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정립되어 가는 과정이 다르기는 하나, 표준어vs방언에 대한 가치 판단은 프랑스, 일본, 한국이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표준어에 부여된 이러한 가치는 국가에 의한 절대적 가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 여 년에 걸친 경직된 표준어 정책은,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공공성’이다.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표준국어대사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핵심은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일 것이다. 또한 사이토 준이치(齋藤純一)는 공공성의 3요소를 ‘공적(official)인 영역으로, 국가에 관계되는 공적인 것, 공동(common)의 영역으로 특정한 인간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공통의 것, 그리고 열린(open) 영역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언어와 연관 지어 언어적 공공성으로 재해석하면, 공적(official)이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 열려있는 언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이러한 언어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표준어는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언어 변종에 지나지 않으며, 표준어 정책은 국가적 가치 부여에 의해 절대적인 기준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경직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일고 있는 표준어에 대한 논쟁, ‘표준어’ 대신 ‘공용어’ 또는 ‘공통어’의 확대 등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을 중심으로 표준어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자주 등장하는 공통어(common language) 혹은 공용어(official language)라는 용어는 여기서 제시하는 ‘공공성’과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공통어나 공용어에서의 ‘공통’과 ‘공용’은 ‘공공성’의 위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탄생의 배경이나 사용 용도에서 보았을 때, 공적(official)인 영역에 치중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용어 또는 공통어라는 개념은 근대 일본어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표준어가 갖는 국가에 의한 ‘통제’, ‘교화’의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패전 이후에 거론되기 시작한 용어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고 있는 표준어 정책에 대한 일련의 변화들은 시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시점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며 그들의 언어권(言語權)에 대한 고민이다.

【参考文献】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고려대학교출판부
- 윤석민(2005), 「일제시대 어문규범 정리과정에서 나타난 수용과 변천의 양상」, 『한국언어문학』 제5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 이상규(2008),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 태학사
- 이익섭(1987), 『국어학사의 기본이해』, 집문당
- _____ (1997),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형진의(2007), 「近代日本における音声中心主義と仮名遣」 42집, 『日語教育』,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_____ (2008), 「近代日本における標準語政策」 45집, 『日語教育』,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이·콘스쿠(1987), 「朝鮮における言語的近代」, 『一橋研究』 第12卷2号
- _____ (1006), 『「国語」という思想』, 岩波書店
- 上田万年(1889/1968), 「日本言語研究法」, 『明治文学全集44』, 筑摩書房
- _____ (1895), 「標準語に就きて」, 『帝国文学』 創刊号
- 斎藤純一(2000), 『公共性』, 岩波書店
- 真田真治(1987), 『標準語の成立事情』, PHP연구소
- _____ (2000), 『脱・標準語の時代』, 小学館文庫
- 田中克彦(1975), 『言語の思想』, 岩波新書
- _____ (1981), 『ことばと国家』, 岩波新書
- 日本方言研究会(1990), 『日本方言研究の歩み』, 角川書店
- 文化庁(2006), 『国語施策百年史』, きょうせい
- 宮島喬(1999), 『文化と不平等』 有斐閣
- _____ (2003), 「共に生きられる日本へー外国人施策と課題」, 有斐閣
- 文部省(1916), 『口語法』
- 安田敏朗(1997), 『帝国日本の言語編制』, 世織書房
- _____ (2003), 『脱「日本語」への視座』, 三元社

要 旨

近代国民国家における標準語の概念は、フランス革命から始まった。さまざまな地方の言葉が話されていた当時のフランスの言語状況において、言語の統一は革命の成功とつながっていた。そこで、地方の言葉には迷信、反革命、連邦主義者、誤謬、損害などのネガティブな価値判断を与え、「撲滅」対象とし、標準フランス語には真理、才能などのポジティブな価値を与えた。

1900年代から本格的に始まった日本の標準語政策も、フランスにおける標準語の価値判断に基づいている。1903年日本全国における方言調査を実施し、「東京の教育ある人々の言葉」という、きわめて抽象的な概念の言葉を人為的に「つくっていく」のである。そのようにつくられた言葉は、「標準語」として国家的な権威が与えられ「美しい日本語」、「正しい日本語」として機能するようになる。反面、方言は「矯正」の対象となる。日本における標準語政策は、1950年代以降、「共通語」、「公用語」などの用語に置き換えられることで、国家主導の気運を払拭しようという動きをみせているが、依然として閉鎖的な規範をいえる。

朝鮮における標準語政策は、朝鮮総督府による綴り字改訂から始まる。その改訂において「京城の言葉を標準とする」という基準が設けられ、今日の標準語に至っている。そしてその後行われる「朝鮮語学会」のハングル研究の基盤となる。朝鮮における言語政策の特徴は、音声言語からなる「標準語」ではなく、文字言語を対象とする「綴り字改訂」に重点をおいていたことである。

いずれにせよ、近代国民国家における標準語政策は、フランス革命当時の標準語vs方言、善vs悪からそれほど変わっていないと思われる。但し、多文化社会に向けてさまざまな論争が起きているのは注目すべきであり、さらに活発な議論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キーワード：フランス革命、標準語、方言、国語調査委員会、共通語、
朝鮮総督府、朝鮮語学会、綴字改訂

투 고 : 2011. 11. 30
1차 심사 : 2011. 12. 17
2차 심사 : 2012. 1. 7